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5-13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및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6. 2. 2.(월) 14:00 ~ 15:00
-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처분대상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시설자명	주소	비고
42-2011-10-0000066	177광*호	이*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계림로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2-2022-30-0000407	620현*호	장*윤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목넘가는길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2-2018-30-0000394	691금*호	윤*인	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 만송로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진흥원 목포지소 ☎061-242-1404
- 한국방송통신진흥원 여수지소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1-330-683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